

민간위탁 근거 조문의 이동 — 제104조에서 제117조로

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바뀌었으며, 아래와 같이 본문의 자구는 같음

종전 조문 —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전부개정 전 「지방자치법」 (2022. 1. 12.까지 시행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 · 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현행 조문 —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전부개정 「지방자치법」 (2022. 1. 13. 시행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 · 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· 검사 · 검정 ·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·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·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대조의 요지

- 두 조문의 본문 자구는 같음 —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만 제104조에서 제117조로 이동하였음.
- 제1항: 보조기관 등에 대한 내부 위임 / 제2항: 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 등에 대한 위임·위탁 / 제3항: 법인·단체·개인에 대한 민간위탁 / 제4항: 재위임·재위탁의 사전 승인.
- 전부개정 부칙은 다른 법률이 인용하는 「지방자치법 제104조」를 「제117조」로 바꾸는 정비 조항을 함께 두었음.